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1991. 12. 30.

내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3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 74 회 정기회

○ 제 6 차 내무위원회 (1991. 12. 27)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민방위국장 전 석 조)

가. 제안이유

광역소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 체제를 정비,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소방서 설치시의 조례와 군 지역 조례를 통합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2원화된 조례 단일화

○ 시(소방서)군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통합 → 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제정

2) 의용소방대 설치권자조정 (제2조)

○ 시장·군수 → 도지사

3) 의용소방대명칭 변경 (제3조)

- 소방서 관할구역 의용소방대는
 -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 ○○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서 ○○읍·면의용소방대
- 소방서 미관할구역 의용소방대는
 - ○○읍·면의용소방대를 → ○○군○○읍·면의용소방대

4) 임용기준 추가 (제5조)

-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자 중 지원하는자를
 -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자 중 자원하는 주민으로 다음사항 고려 임용
 - 관할구역내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진 주민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민
 - 신망이 두터우며 의용봉공 정신이 강한 주민

5) 의용소방대장·부녀의용소방대장 지휘·감독체계 조정(제7조)

- 소방서장, 읍·면장을 → 소방서장, 군수로 조정

6) 임용권자 조정(제10조)

-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부녀부대장, 지역대장을 소방서장,
읍·면장 추천 시장, 군수 임용 → 소방서장, 군수 추천 도지사 임용
- 대원 : 의용소방대장 추천 소방서장, 읍·면장 경유 시장, 군수 임용
→ 의용소방대장 추천 소방서장, 군수 임용

7) 의용소방대 검열 강화(제20조)

- 연 1회 → 연 2회

8) 의용소방대의 경비

- 기본경비 : 시·군 예산 → 도 예산에 편성
- 활동비 보조 등 신설(제24조)
 - 의용소방대 관련업무 수행 필요경비 : 소방서장, 군수
- 시·군 행정에 필요한 지역활동 수행 필요경비 : 시장, 군수

9) 재해보상 청구 지급(제30조)

- 소방서장, 읍·면장 경우 시장·군수 → 의용소방대장 경우 소방서장·군수

10) 의용소방대 연합회 규정 신설(제31조)

- 도 연합회 : 시·군행정구역단위 의용소방대 대표로 구성
- 시·군 연합회 : 관할행정구역내 각 대장으로 구성

11) 의용소방대 연합회 경비지원 규정 신설(제33조)

- 도 연합회 및 시·군 연합회 : 도지사
- 시·군 연합회 지역활동 필요경비 : 시장·군수

12) 관할구역내 업무지원 규정 신설(제34조)

- 시장·군수의 의용소방대 지원요청시 소방서장(의소대장)적극 참여 지원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가. 소방법 (법률 제4419호)이 1991.12.14자로 개정 공포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 수행책임이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에서 도지사로 조정되는등 소방행정체제가 광역소방행정체제로 전환되면서

나. 종전 시·군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었던 의용소방대의 조직이 개정 소방법 제86조의 규정에의거 시·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설치,명칭,정원,임면,복제,복무 및 운영예산 지원등 의용소방대 관리업무 전반을 도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음,

다. 따라서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을 광역소방행정 체제에 부합되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의용소방대 업무 전반을 도지사가 조정 통제 및 지휘·감독하되, 의용소방대의 설치운영권을 소방서 관할구역은 소방서장이,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관할 군수가 관장토록 하였으며

라. 임용권의 행사는 대장급등 지휘관의 임용은 도지사가, 부장급 이하 대원은 소방서장 또는 군수가 임용토록하여 소방서장과 군수의 지휘권 확립을 도모하고, 의용소방대연합회 구성 근거를 규정하는등

의용소방대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도의 원안대로 의결
(참석 7인 , 찬성 7인)

7. 소수의 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